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2. 11. 27.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마포구에 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 가.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를 신설함  
(안 제4조제2항)
- 나.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 제5호)
- 다. “정관으로” 를 “재단이 따로” 로 함(안 제5조제2항)
- 라.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 을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 으로 함  
(안 제6조제1항)
- 마. “예술·체육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함  
(안 제6조제1항제3호)
- 바.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으로 함  
(안 제10조제1항제4호)
- 사.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

성 등 장학 사업 또는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직 이사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로 함(안 제11조제2항)

아.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로 함(안 제11조제3항)

자.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로 함(안 제11조제4항)

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함(안 제11조제5항)

카. “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함(안 제12조제5항)

타.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로 함(안 제14조)

파.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를 신설함(안 제21조)

하.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신설함(안 제2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3.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안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를 “재단이 따로”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을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기준”을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한다.

3. 예술·체육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정출연금”을 각각 “출연금”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등 장학 사업 또는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직 이사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안 제15조제1항 전단 중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를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재정출연금</u>”이란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u></p> <p>제4조(설립)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u>&lt;신설&gt;</u></p> <p>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1. 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3. <u>우수대학생의 해외연수(유학)사업</u></p> <p style="padding-left: 2em;">4. 5.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u>정관으로</u> 정한다.</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em;">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3.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p> <p>제4조(설립) ① (원안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p> <p>제5조(사업) ① ----- ----- -----.</p> <p style="padding-left: 2em;">1. 2. (원안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u>&lt;삭제&gt;</u></p> <p style="padding-left: 2em;">3. 4. (원안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② ----- ----- 재단이 따로 ----- -.</p>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1. · 2. (생략)

3. 예·체능 분야 국가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재정출연금

2. · 3. (생략)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재정출연금

2. · 3. (생략)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

-----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 -----

1. · 2. (원안과 같음)

3. 예술·체육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② -----

----- 장학금 지급기준 -----

제9조(재산의 조성) ① -----

1. ----- 출연금

2. · 3. (원안과 같음)

② -----

1. ----- 출연금

2. · 3. (원안과 같음)

제10조(정관) ① -----

1. ~ 3. (원안과 같음)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p><u>관한 사항</u></p>	<p><u>그 임면에 관한 사항</u></p>
<p>5. ~ 11. (생략)</p>	<p>5. ~ 11. (원안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원안과 같음)</p>
<p>제11조(임원) ① (생략)</p>	<p>제11조(임원) ① (원안과 같음)</p>
<p>② <u>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 인재육성 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u></p>	<p>② <u>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등 장학 사업 또는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직 이사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u></p>
<p>③ <u>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u></p>
<p>④ <u>대표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구의 관련국장(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u></p>	<p>④ <u>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u></p>
<p>⑤ <u>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⑤ <u>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⑥ (생략)</p>	<p>⑥ (원안과 같음)</p>
<p>제12조(이사회) ① ~ ④ (생략)</p>	<p>제12조(이사회) ① ~ ④ (원안과 같음)</p>
<p>⑤ <u>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이사회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14조(회계연도) <u>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u></p>	<p>제14조(회계연도) <u>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p>



른다.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

-----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② -----

-----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